

#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전면 개정에 따른 협정 대상 품목의 수출입 절차 이행방안 연구

양승호\*, 윤성호, 신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shyang@kinac.re.kr

## 1. 서론

2015년 11월 25일, 4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한국과 미국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이하 '신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구 원자력협정 체제는 종료되고 새로운 협정이 효력을 갖게 됐다.

신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핵물질, 감속재물질, 원자력 관련 장비 및 구성품 등 협정 대상 품목을 직접 이전하거나 양국간 합의에 따라 제3국으로 재이전할 수 있으나, 협정 대상 품목의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이전 절차를 요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 에너지부와 협정 대상 품목의 직접 이전과 제3국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본 논문은 행정약정에 따른 협정 대상 품목의 양국 간 직접 이전 및 제3국 이전 절차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2. 본론

### 2.1 협정 적용 대상 확정 절차

신협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한쪽 국가에서 상대 국가로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이 협정 적용대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수출국은 수입국에게 선적에 앞서 이전할 품목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서면 통보를 받은 수입국은 다시 서면으로 통보의 수령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출품목이 수입국의 관할권으로 반입이 되면 최종 협정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다.

### 2.2 행정약정에 따른 수출입 절차 분석

협정 적용 대상 확정과 관련된 상세 이행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국 에너지부가 체결한 행정약정에 기술되어 있다. 행정약정을 양국간 직접 이전과 사전동의 국가와 미 동의 국가로 재이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 2.2.1 양국간 직접이전 절차 분석

협정 대상 품목을 양국간 직접 이전하는 경우, 수

출국은 선적 전에 수입국에 이전품목에 관한 정보를 행정약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수입국은 서면 통보 수령 후 30일 이내에 수입자의 신원 및 수입목적 등을 확인하여 행정약정 서식에 따라 서면 확인서를 수출국에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알려야 한다.

수출국은 수입국의 서면확인서를 확인 후에 선적을 허가하게 되며 선적 후에는 선적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국은 품목을 수령 후 수출국에 수령 확인서를 통보함으로써 직접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

상기 절차는 협정 품목의 이전을 사전에 수입국에 확인시켜 협정품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Fig. 1. Direct Transfer Procedure between ROK-US.

#### 2.2.2 사전동의 국가로 재이전 절차 분석

이번 신협정에서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여 지정한 사전동의 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협정대상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로이 재이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협정대상 품목이 제3국으로 재이전됨을 선적 전에 통보해야 하며 상대국의 서면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제3국으로 선적할 수 없다.

이는 상대국이 제3국에 재이전될 품목이 상대국과 제3국간 원자력협력협정 대상이 된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한미간 협정대상 품목은 재이전시에도 제3국과 미국간 협정대상 품목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 이전 절차와 동일하게 선적 후에 선적 관련 정보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재이전시에는 제3국이 수령하게 되므로 별도의 수령통보는 불필요하다. 상기 절차를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Fig. 2. Retransfers to third Countries with Prior Consent.

### 2.2.3 사전동의 미지정 국가로 재이전 절차 분석

사전동의 국가로 미지정된 국가로 협정 대상 품목을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행정약정 서식에 따라 재이전에 대해 사전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대국은 자국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재이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30 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는 상대국과 제3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국은 이전될 품목이 NPT 제3조2항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해당 품목이 핵무기의 제조·개발·연구에 사용되지 않으며 사전 동의 없이 재이전할 수 없다는 보장을 받는 경우에만 동의를 승인하게 된다.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사전동의 국가 재이전 절차와 거의 유사하나 상대국에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 2.3 수출입 절차(제도 및 시스템) 이행방안 연구

### 2.3.1 제도 개선 방안

앞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협정 대상 품목의 수출입 시 사전통보, 선적통보, 수령통보가 요구되나 이를 원자력안전법 내 국제이전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보고규정')은 현재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행 보고 규정은 한-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위해 핵물질의 국제이전 사전통보와 비핵물질 및 장비의 선적통보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절차를 반영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 규정의 대상이 국제규제물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한미 간 협정대상품목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정약정 절차 미 이행 시 양국 간 직접 이전이나 제3국 이전을 금하고 관련 절차의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협정 대상 품목의 수출입을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2.3.2 시스템 개선 방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전략물자와 핵물질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이하 'NEPS')을 구축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협정대상 품목의 데이터베이스를 NEPS 내 지능형 전략물자 심사지원시스템에 구축하고 행정약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선안을 정리하면 Fig. 3과 같다.



Fig. 3. Improvement Plan of NEPS System.

## 3. 결론

본문에서 실험결과와 행정약정에 따른 협정대상 품목의 직접이전 절차와 제3국 재이전 절차를 분석하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면 개정된 협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협정품목을 원활히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4.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원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No. 1305014).

## 5. 참고문헌

-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2015.11.25.
- [2] "(한)원안위-(미)에너지부간 행정약정", 2016.4.1.
- [3] 이광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2015-4호.